

의안번호	제 162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339회)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병진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
----------	-----

발의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박병진, 임순묵, 강현삼,
김봉희, 임현경, 이광진,
박봉순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 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1) 행정부지사 →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나.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삭제”를 삭제한다.

제5조 앞의 “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충청북도 단위의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도지사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앞의 “제4장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위원회 등”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

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u><삭 제></u>
<u>제2장 삭제</u>	<u><삭 제></u>
<u>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u>	<u><삭 제></u>
<u>제5조 (생 략)</u>	<u>제2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u><신 설></u>	<p><u>제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u> <u>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u> <u>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u> <u>4. 충청북도 단위의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u> <u>5. 그밖에 도지사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u>

제6조 (생략)

<신설>

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6조(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법 제2

2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제7조 (생략)

<신설>

제8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

인정하는 사람

제4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충청북도 단위의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도지사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제4장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위원회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삭제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신 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제13조 (생략)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삭제>

<삭제>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생략)

제1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